
2021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1.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21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21. 11. 22.(월) 14:00 ~ 15:20
- ◆ 장 소 : 영상회의
- ◆ 참 석
 - 심의위원 : 000, 000, 000, 000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2건, 제3자 이의신청 1건
 - (2021-85) : 인권침해 신고 신청 및 의뢰 내용 원문
 - (2021-86)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택시 운행기록
 - (2021-87) : 경전철 난곡선 연장 관련 서울시의원 질의 문건 및 해당 부서 답변 일체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21-85) : 기각 - 비공개
 - (2021-86) : 기각 - 공개(*제3자 이의신청)
 - (2021-87) : 부분인용 - 부분공개

【 개 회 】

〈000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000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회는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제3자 이의신청 1건과 청구인 이의신청 2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각 안건의 간사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안건마다 질의응답, 토의를 거쳐 최종 결정사항은 위원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2021-85 이의신청 】

안건명 : 인권침해 신고 신청 및 의뢰 내용 원문

<000 위원>

- 의안번호 제2021-85호 인권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팀장>

- 인권담당관 팀장 000라고 합니다.

<000 위원>

- 정보공개청구인이 아직도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이신 것이지요?

<000 팀장>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이분이 지금 목적이 공익제보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자료를 원하시는 건가요?

<000 팀장>

- 목적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피신청인이 총 5명이었는데요.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으나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않고 두 분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청구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신청서 상의 제3자가 언급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소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청구인의 의도가 색출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또한 이 분의 가해행위가 직원들에게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승진이라는 것들을 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연동해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사건 발생 중에 대자보도 붙고 이런 상황에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건을 약간 무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0 위원〉

○ 이 사건은 감사가 종결이 된 것인가요? 종결되고 조치가 있었던 건가요?

〈000 팀장〉

○ 저희 사건 처리 절차가 신고가 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요. 그 의결에 따라서 권고가 결정이 되면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과로 보내거나 또는 이 기관은 투출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출기관 인사부서로 보내서 인사조치를 하라고 권고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해당 건은 각각 기각 처리되어서 인권침해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조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건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000 위원〉

○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제보내용을 알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000 팀장〉

○ 네, 그렇습니다.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문서는 저희과에 직접 제3자가 신고

를 해온 것이고요. 또 한 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분이 조사담당관으로 다시 공익제보자 신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가명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청서 내용서 상에 이 피해자가 속해 있는 소수집단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지금 2가지 사건을 처리를 했잖아요?

<000 팀장>

○ 네.

<000 위원>

○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건은 신청인이 조사담당관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인이 조사담당관이 된 건가요? 사안이 알 수가 없어서.

<000 팀장>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인물인 제3자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인권담당관에 직접 신청한 경우가 바로 신청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 이름으로 동일한 A라는 사람이 조사담당관에 신청을 했는데 조사담당관이 2차 피해와 관련한 성희롱 사건은 투출기관의 경우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로 신청해서 조사담당관이 신청인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신고 내용의 신청접수자는 동일 인물인 A가 됩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인권침해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지요?

〈000 팀장〉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구제위원회 제출한 여러 가지 신청서나 그런 자료들을 원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복성이라든지 그 사건 관계에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서 밝혀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 되신다는 것이지요?

〈000 팀장〉

-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 5명 중에 2명만 신고 조사를 원했고 나머지 3명은 조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후에 신고 내용들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귀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이 전체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았던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3명에 대해서 조사가 유보된 이유는 뭔가요?

〈000 팀장〉

○ 피해자가 처음에는 조사를 원치 않다가 A라는 분이 워낙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분은 직접 통화를 하기도 어렵고, 오로지 메일로만 회신을 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구체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피해자랑 연결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고심 끝에 행위자 3명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고, 이미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는 조사담당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럴 경우에는 시 내부에서 2개 부서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중복 조사를 못 한다는 원칙 하에서 저희가 피해자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지요? 아직 완결되지 않고?

〈000 팀장〉

○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의 쟁점이기는 한데요. 스토킹을 당했던 원 행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합의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협박에 가깝고 무리한 요청을 했는데 왜 기관이 합의를 용인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담당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게 된 겁니다.

〈000 위원〉

○ 그러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해자하고 합의를 한 건가요?

〈000 팀장〉

- 네, 그렇습니다. 이분의 신청 내용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정말 부적절했고 그게 바로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겁니다.

〈000 위원〉

- 그러면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인 것인가요?

〈000 팀장〉

-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충격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본인이 합의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이것을 민형사상에 문제화 시키겠다거나 그런 의지도 있는 건가요?

〈000 팀장〉

-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조사담당관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가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신고내용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비공개 사유가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11조 신분비밀보장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비공개 결정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000 팀장〉

- 비공개 사유가 3개인데요. 말씀하신대로 2개는 그 2가지고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이 정보 자체가 제3자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제3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제2조1호나목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000 위원〉

- 정보공개제도의 취지가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 경우에는 비공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비공개 사유의 법적 근거로 서울시의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1조 신분 비밀보장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법규범에서도 그렇듯이 조례의 법적지위가 사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규범화된 정보공개 알권리를 이 조례 규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공익제보자이면 몰라도 대등한 규범적 서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정한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우리는 이것을 비공개사유로 한다는 것은 하위의 조례가 상위의 헌법과 법률상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셈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 팀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관련 법령의 위계 관계에 따라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상위법에 대한 기속을 받고 있고, 그런데 공익제보자보호법을 근거로 할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서 이 신고인을 공익제보자로 지정을 해야만 보호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지자체 기관에서 해당 신고인을 공익제보자로서 지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주관부서 기관인 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신고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그 조례에 따라서 기관이 공익제보자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기관이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를 유추 해석을 하시면 법률상 위배되는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00 위원〉

- 그 부분은 법적 근거로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만으로도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지난번 고발사주 논란에서도 공익제보자 지정은 국민권익위만 할 수 있는데 검찰이 따로 공익제보자로 판단할 수 있느냐 논란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부분은 적용 범위를 제한시키거나 해서 따로 판단되어야 될 부분이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1호 상에 따른 근거로 서울시 조례를 내세우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지금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분류가 된 것은 아닌 것이죠?

〈000 팀장〉

- 법률상 규정하는 공익제보자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제출한 자료 중에 제3

자 의견 청구한 결과물을 첨부해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당사자에 대한 제3자 의견청취 결과가 있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조사담당관 의견청취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담당관의 답변은 조례와 시행규칙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 볼 부분이 아니냐는 비공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청구인이 성명이나 이메일을 삭제하고자도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성명이나 이메일을 삭제하더라도 이 내용상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쉽게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000 위원〉

- 소관부서 주무관님은 잠시 대기하셨다가 의결 내용 선포 시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퇴장)

〈000 위원〉

- 처음에는 공익제보자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지정됐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공익제보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호에 해당되는지, 타법령에서 정한 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아까 000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상위법을 규정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1호는 포함시키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6호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메일이나 성명을 삭제하더라도 내용상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전체

내용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이미 본인이 조사과정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만 본다면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전체적인 맥락에서 공익제보 내용이라 생각해서 기각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저도 기각 의견이고요. 아까 소관부서에서 설명한대로 주민번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빼더라도 나머지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기각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저도 기각입니다.

〈000 위원〉

- 저도 기각 의견이고요. 000 위원님 의견처럼 이 사건은 명확하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6호에 사생활 비밀보호 이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관부서 재입장)

〈000 위원〉

-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 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각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이고요. 기각 사유는 이메일, 성명 등을 삭제하더라도 나머지 정보를 가지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내용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1-85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1-86 제3자 이의신청 】

안건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택시 운행기록

〈000 위원〉

- 의안번호 제2021-86호 택시정책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주무관〉

- 택시정책과 000입니다.

〈000 위원〉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었죠?

〈000 주무관〉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신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000 주무관〉

- 그것은 다른 회사에서 신청한 건에 대해서 공개 결정이 난 것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회사입니다.

택시 회사가 254개가 있는데 각 회사에서 이의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000 위원>

- 네. 또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인택시의 영업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나요?

<000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000 주무관>

- 정확한 택시 영업 수입을 파악하고 현황을 분석해서 객관적인 택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수집하면서 위치 정보 같은 것들 때문에 사업주들의 동의를 받고 활용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이의신청인은 이 자료가 공개되면 이것을 소송자료 활용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000 주무관>

-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소송이 전제가 되어서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000 주무관>

- 그쪽이 근로자들하고 소송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법무법인에서 위임장을 받고 정보공개 신청을 한 것을 보면 택시법인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000 위원〉

- 이의신청인은 해당 정보를 공개했을 때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누설될 수 있고 운행기록에 대한 분석 결과는 소송 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정보공개가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택시 정책과 입장에서는 해당 자료가 공개됐을 때 소송 자료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법률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000 주무관〉

- 첫 번째로 저희는 이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 회사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제3자의 정보를 요구할 때는 그것은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3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집하는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서 그 사람을 별주지를 못합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서 별주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료 그대로를 주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지는 저희가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지서를 보게 되면 4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내용에 보면 16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000 주무관〉

- 네, 원래는 16명입니다.

〈000 위원〉

- 이 4명만 해당 자료가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16명 다 공개가 되는 건가요?

〈000 주무관〉

- 4명만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수집할 때 동의서에, 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1년 이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료가 부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할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4명만 1년 이내 자료가 있어서 그것만 공개하는 겁니다.

〈000 위원〉

- 택시 운행 영업기록이 해당 운전자인 택시기사의 위치, 동선 여부가 파악되기 때문에 민감정보에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관련 장치를 설치할 때 해당 택시회사와 택시 운행자 사이에 아마 이 부분에 관한 계약이 있었을 것 같고 또한 서울시도 택시 정책 수립과정에서 운행정보가 필요해서 이것을 파악하면서 택시 정책이나 운행과 관련되어서만 이것을 활용할 뿐이지 이것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의 뭔가 사전 협약이 있었나요?

〈000 주무관〉

- 정보제공동의서라는 것을 사업자들로부터 받았고요. 정보제공동의서상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활용범위를 4가지로 정해놓는데요. 택시 정책용으로 사용한다, 도로 소통 교통용으로 분석용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3자한테는 정보제공을 안 하는데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운행기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정보가 들어가지 않고요. 이 사람의 속도 이런 정보가 아니라 순수하게 미터기에서 나오는 영업정보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00 위원>

- 알았습니다.

<000 위원>

-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소관부서 주무관님 잠시 대기하셨다가 의결내용 선포 시 다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퇴장)

<000 위원>

-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전에 저희가 제2정보공개심의회에서 여러 번 다루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2021-36호 안전이 동일한 안전인데, 택시기사 본인이 신청해서 공개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000 위원>

-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 정보공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없는 것 같아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저도 주심위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저도 이전 사안하고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주심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공개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정되었습니다. 주무관님 입장해 주십시오.
(소관부서 재입장)

〈000 위원〉

-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 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1-86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1-87 이의신청 】

안건명 : 경전철 난곡선 연장 관련 서울시의원 질의 문건 및 해당 부서 답변 일체

〈000 위원〉

- 의안번호 제2021-87호 교통정책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주무관〉

-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000이라고 합니다.

〈000 위원〉

- 본 안건은 000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00 위원〉

- 정보공개청구 안건이 ‘경전철 난곡선 연장 관련 서울시 의원 질의문건 및 해당부서 답변일체’가 되는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비공개 의견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000 주무관〉

- 네.

〈000 위원〉

-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경전철 난곡선 관련해서 2015년 무렵에 서울시에서 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발표계획에 추가해서 남부선 연장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되는 일체의 문서를 공개해달라는 취지이지요?

〈000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문제는 교통정책과에서 비공개 의견의 사유를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답변 사유를 보면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6항에 의거하여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000 주무관〉

- 네. 행정조사기본법이요.

〈000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청에서 행한 행정조사 관련 사항은 다 비공개인가요?

〈000 주무관〉

-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조사라는 것은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 ‘행정기관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하는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제4조에 6항에 따라서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4조6항에서 나왔던 원래의 조사목적이라는 것이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비공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000 위원〉

-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5년에 난곡선에 대해 서울시에서 공개발표를 했더라고요.

〈000 주무관〉

-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그 뒤에 난곡선 남부 연장 노선도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000 주무관〉

- 남부 연장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 승인 고시 안에 나와 있습니다. 후보노선으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후보노선이라고만 선정이 됐지 그게 본노선으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000 위원〉

- 그때는 후보노선으로 선정됐지만 본노선으로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지금 현재 관련 난곡선 연장 안은 지금 계획으로 이렇게 확정된 상태인가요?

〈000 주무관〉

○ 확정은 아니고요, 계획일 뿐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000 위원>

○ 부서 검토의견에서 현 단계가 계획 검토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서 계획 승인하고 기재부 예타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남은 절차가 많겠네요?

<000 주무관>

○ 네, 엄청 많습니다.

<000 위원>

○ 현재 청구인은 난곡선 남부 연장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이 교통정책과에 질의한 문건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제출한 답변 일체를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의원의 질의문건이나 답변 문건 자체는 그게 이미 의사 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되는데, 문제는 교통정책과에서 시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내용 중에 이처럼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행정계획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000 주무관>

○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 중인 단계에 내용들입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이 내용들이 시의원에게 해당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 문건으로 제출된 적이 있습니까?

<000 주무관>

- 지금 청구인이 요구하는 것이 저희가 시의원한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인데.

〈000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원에게는 제출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처럼 미확정된 행정계획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가능하면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답변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 중에는 앞으로 장차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에 공개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있으시냐는 것이지요.

〈000 주무관〉

-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법에서 나와 있는 것이나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요구한 게 있는데요. 일부 요구자료 중에는 저희 쪽에서 진행했다기보다 기타 회의의 자료들이 일부 있거든요. 기타 회의 내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이지요. 제가 참석한 회의가 아니고 다른 회의의 일부 비공개 내용이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에 시의원의 질의 문구 자체는 서울시 회의록을 보면 질의 자체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답변 일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서로 전달된 겁니까?

〈000 주무관〉

- 네, 문서로 전달됐습니다.

〈000 위원〉

- 문제는 난곡선 자체하고 난곡선 남부연장 계획은 다르잖아요?

〈000 주무관〉

- 네, 많이 다릅니다. 난곡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한 노선이고요. 서울시에 서 계획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고 기재부 예타를 받는 절차를 밟아서 가는 노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곡선 금천 연장은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기 전 맨 앞의 검토 단계에 있는 노선입니다.

〈000 위원〉

- 난곡선 남부 연장 노선 이게 정보공개가 되고 이게 관련 주민들이나 그 지역 분들에게 공개가 되면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또는 괜한 오해라든가 등등 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까?

〈000 주무관〉

- 현재 난곡선 관련해서 제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난곡선이 아닌 금천 구 연장까지도 기재부 예타를 해달라,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서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남부연장 노선 안도 나중에 혹시라도 공개가 되면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000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청구인 이의신청서에 보면 서울시에 요청한 문건이 3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난곡선 연장과 관련한 질의문건 일체, 두 번째가 금천구 경전철 관련해서 간담회 내용 일체, 세 번째가 난곡선 연장과 관련한 질의서 일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금천구 경전철이라는 것이 난곡선 연장사업이 아니라 난곡선 사업을 의미하는 건가요?

〈000 주무관〉

- 저는 난곡선 금천 연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000 위원〉

- 청구인은 난곡선 그 사업 말고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청구를 한다고 보신건가요?

〈000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두 사업은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난곡선 연장 관련해서는 주민대표하고 서울시하고 간담회 같은 것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000 주무관>

- 한 번도 없습니다.

<000 위원>

- 주민대표하고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난곡선 연장사업이 아니라 난곡선 사업인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난곡선도 주민대표랑 간담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000 위원>

- 그래요?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2018년도인가 금천구 난곡선 관련해서 간담회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000 주무관>

- 2018년도에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청취 할 때 만난 거예요.

<000 위원>

- 그것은 연장사업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난곡선 사업하고 관련된 건가요?

<000 주무관>

- 난곡선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일단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하네요. 청구인이 난곡선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사업만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청구내용을 보니까 경전철 관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의문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난곡선 연장사업과 관련된 질의문건 일체 답변까지 포함해서 청구인이 요청을 한다고 하면 2018년도에 했던 간담회는 이 청구하고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간담회가 있었나 해서. 혹시 간담회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단계에서 이루어지나요?

<000 주무관>

- 저희가 계획을 다 완료하고 나서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00 위원>

- 현재는 계획만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저희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5년 단위로 재변경 계획에 대한 것도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간담회는 10년 단위계획 했을 때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한 간담회이고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이 한참 된 이후에 간담회가 열릴 수 있겠네요?

<000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공개를 요청한 질의서와 답변서에는 기존에 공개된 기존계획 외에 플러스알파의 요인들이 있는 것이지요?

〈000 주무관〉

- 플러스알파의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000 위원〉

- 공개된 기본계획 외에 서울시가 나름대로 계획했던 여러 사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부 연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공개되었던 것 외에도 플러스알파의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라 검토 중인 단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했을 때에는 아까 000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동산값 폭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또 다른 변경이 있다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다른 추가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문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주무관님은 잠시 대기하셨다가 의결내용 선포할 때 다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퇴장)

〈000 위원〉

- 청구인이 난곡선 연장 관련해서 해당 시의원과 서울시가 주고 받은 공문 일체를 요구하는데 지금 답변 내용은 여기 첨부 파일에 보시면 요구자료 2327번, 2093번이라고 해서 이 답변내용만 보면 굉장히 답변내용이 건조해서 이것은 공개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밝히는 것처럼 기존 난곡선에 추가해서 남부연장은 단지 계획도 아니고 그냥 검토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내용들까지 다 공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투기문제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문서 일체 가운데 서울시의원 요구자료 2327, 2093 이것은 공개를 해도 아직 계획이다 이런 식의 건조한 내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공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체라고 해서 청구인도 범위를 특정하지 못 했고요. 요구자료 2327, 2093 이것은 읽어봐도 아직 계획이나 이런 등등 밖에 없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해당 시의원의 질의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들어 있는 자료 2개만 공개를

하는 것이 정보공개에 취지에도 맞고 나머지 남부연장 노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공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000 위원〉

- 요구번호 2093 같은 경우에는 B/C값도 나와 있고 그래서 ‘최종노선에서 미 선정 됨’ 이것은 기존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난곡선이기 때문에?

〈000 위원〉

- 이것은 난곡선이고 난곡선 연장은 아닌 것 같아요.

〈000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난곡선 남부 연장 그 건만 아니라고 하면 기존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000 위원〉

- 그렇게 특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베타 조사 진행 중이다. 그 이후에 난곡선 금천연장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보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질의답변은 공개를 해도 크게 다른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00 위원〉

- 저는 비공개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한 기준에 있었던 계획에 대한 질의 응답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공개도 해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 내용을 다 따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담당 부

서가 조금 수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 결정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의결을 들을 때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부분공개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000 위원〉

- 네. 질의응답 그런 것은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행정계획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공개를 해줘야 되느냐 한계를 설정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내부 검토 중이고 계획이 한참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럴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이 내부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미공개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행정계획은 공개가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시민의 참여도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행정계획에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구체적인 계획내용 같은 것이 노출되지 않는 한에서는 일정 부분 공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기준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게 요구자료 2327, 2093 두 문건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굉장히 추상화된 계획 정도만 언급하고 있어서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다 검토를 해봤었는데 2327 같은 경우는 공개돼도 별 지장이 없고 이미 주민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2093에서 보면 난곡선 연장 검토에 관한 문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개가 돼도 지장이 없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은 주무관님께 좀 더 여쭙 봐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분공개 의견이
요.

정리를 하자면 2327과 2093건 정도는 공개하되 2093에서 노선 관련한 결론 부분이 일반적으로 공개돼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
고요. 그리고 이게 비공개 사유로 주무관님께서 여러 개를 써 주셨는데 저도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를 언급한 것을 보고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 포
괄적인 법규를 들이대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000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을 해서 근거사유
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000 위원〉

-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부터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
정조사기본법 제4조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제1
항 1호를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을 내세운 것인데 원칙을 가지고 들이대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
각이 들고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5호만 적용하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 맞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000 위원〉

○ 동의합니다.

〈000 위원〉

○ 제5호만 적용하고, 저도 부분공개 의견이기는 한데 2093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재임장)

〈000 위원〉

○ 주무관님, 위원님들이 부분공개 의견이신데요.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내용 중에서 공개됐을 때 현저하게 행정의 차질 빛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컨대 난곡선 연장에 관한 부분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이 공개될 경우에 미칠 현저한 영향이 있을까요?

〈000 주무관〉

○ 일단은 요구번호 2093번에 1번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93의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분공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000 위원〉

-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93문건의 경전철 연장선 사업에 대한 사항 부분이요. 거기에서 보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난곡선 연장을 검토 하였지만 최종 노선에서는 미선정 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했지만 최종 노선에서는 배제되었다는 내용은 관련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건가요?

〈000 주무관〉

- 네,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요구자료 2093번 중에서 1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는 얘기인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000 위원〉

- 저는 2327과 2093 둘 다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연장선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원만히 통과되면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예타 검토해서 통과되면 그 다음 절차로 다시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나아가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전체 다 공개하자는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저도 000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예타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10억 이상 사업은 예타가 진행되어야 하고 예타가 통과되면 당연히 검토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런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000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을 부분인용 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분인용 내용은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행문과 요구자료 2327번,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행문과 요구자료 2093번 4가지 문건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1-87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적용조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 내부검토 중인 사안으로 나머지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